장외주식 거래절차와 방법

장외주식의 증권의 종류는 일반 증권(명의개서)과 통일주권이 있습니다. 통일주권은 증권계좌 간에 거래가 가능한 주권입니다. 일반 증권은 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초기에는 모두 일반 증권을 사용합니다.

1 통일주권 :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고 증권계좌 간에 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

-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 편리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
- 통일주권은 전산으로 증권예탁원을 통한 거래를 함으로 가짜나 사고주권의 우려는 없음

□ 통일주권 거래절차와 방법

1. 매도자가 매수자의 계좌로 주식 입고(대개 선증권계좌입고 후 은행계좌이체)
2. 실물과 현금 교환(증권계좌 입고가 안되는 주식)

※ 매도, 매수 시 주의사항

- 증권이 통일주권이면 불빛에 비추어보면 "대한민국정부"라는 은서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증권계좌이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가 가격을 흥정하고 매도인이 먼저 주식을 계좌이체 시키고 매수인은 자신의 계좌에 주권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.
- 동일한 증권사간에 거래시는 증권사 업무시간까지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타증권사간의 계좌이체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늦어도 2시이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 일반증권(명의개서)

※ 명의개서 : 주식을 사는 경우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, 이름 등을 기입하는 절차
거래 당사자들간 작성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, 회사 자체에서 주주명부를 정리하여 "주식미발행확인서"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주주에게 송부

□ 명의개서 주권 거래절차와 방법

1. 매수자(계약서, 신분증명서류), 매도자(계약서, 주식미발행 확인서 원본, 인감증명서, 신분증명서류)가 관련 서류를 회사로 송부
2. 회사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회사 주주명부에 등록을 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매수자에게 "주식미발행 확인서"를 매수자에게 송부

예) 1,000주 소유자가 5백주와 3백주를 각각 매매하고, 1,000주짜리 "주식미발행 확인서" 원본을 회사로 보내면, 회사에서는 5백주, 3백주, 2백주짜리 확인서를 발행하여 각각의 해당자에게 보냄

※ 매도, 매수 시 주의사항

- 주식을 사도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. 즉, 배당이나 증자, 유.무상증자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아직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일 경우에는 향후 실물 주권이 발행될 때에 주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 받아야 안전합니다.